



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개선방안 보고

2021. 9. 8.

법관인사분과위원회

1. 관련규정

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

제10조(법관인사분과위원회)

-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.
-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.
 1.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
 2.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,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
 3.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,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
-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-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-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.

2.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증원의 필요성

가.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 증원 필요성

▣ 종전 위원회의 구성

- 괄호안은 여성법관 수(내서)

구분	고법부장(위원장)	법원장(지법부장)	지법부장	고법판사	판사
1기	1(0)	1(0)	1(0)	-	2(2)
2기	1(0)	1(0)	1(0)	-	2(2)

▣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직위, 성별, 출신별 안배 필요



- 인사의 공정성,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직위별 법관의 참여가 필요하고, 가급적 직위별 성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계속근무법관(지방권 장기근무법관 선정 및 지역계속근무법관제도 유지 등)이나 경력법관(전보패턴, 지법부장 보임 및 해외연수 등)에 대한 안배도 필요함

나. 검토 안건의 증가에 따른 증원 필요성

▣ 검토 안건의 증가

- 인사정책 관련 안건

1기(19~20년)	2기(20~21년)	3기(21~22년) 예상
장기근무제도	⇒ 장기근무법관 책임성 강화	자문회의 회부 안건(1)
	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범위	...
	⇒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수립	자문회의 회부 안건(n)

- 구체적 보직인사 관련 안건

1기(19~20년)	2기(20~21년)	3기(21~22년) 예상
가사소년전문법관	가사소년전문법관	가사소년전문법관
대법원 재판연구관	대법원 재판연구관	대법원 재판연구관
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	⇒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	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
사법연수원 교수	⇒ 사법연수원 교수	⇒ 사법연수원 교수
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	⇒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	⇒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
고등법원 판사	⇒ 고등법원 판사	⇒ 고등법원 판사
	지원장	지원장
	⇒ 장기근무법관	⇒ 장기근무법관
		+a(전문법관)



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재판

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 보고자료



▣ **안건 검토 충실화를 위하여 증원 필요**

- 매년 검토 안건이 추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검토의 실질화 및 충실화를 위하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함

다. 증원 규모 > 2인

▣ **위원회 논의의 실질화 및 충실화와 더불어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**

▣ **증원된 인원은 각각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**

- 증원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 지명보다 전국법원장회의 등의 추천을 통한 위원 임명이 적절함을 고려